

문화체육사업소 부분감사 결과 보고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5. 10. 28. ~ 10. 30.(3일간)
- 감사범위 : 2013.11월 ~ 2015.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김종삼 외 3명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 직원 복무관리실태

지적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0건(시정 7, 현지시정 3)
 - 본 처분 7건(시정 7)
- 재정상 조치
 - 2건 282,465원(불입 1건 34,465, 회수 1건 248,000원)
- 신분상 조치
 - 5 명(주의 5명)

감사총평

- 문화체육사업소는 군민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양궁장, 문화체육센터,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학생체육관 등)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로서 금번 감사에서는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주요 예산집행,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
- 회계분야에서는 업무관련 법규, 지침 등을 잘 숙지하고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경미하고, 각종 보조사업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이 정착되는 등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시행되었음.

주요지적사항

1. 청사 보안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함에도, 2013.11월부터 2015.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 보안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2.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PP포대 구입 외 2건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하였음.
-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부행정전산망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4년 2건, 2015년 1건에 대하여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4.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2014년 ~ 2015년 10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34,465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음.
- ▶ 인센티브 34,465원을 세입조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5.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비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카드 보관·관리요령에 맞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하나(결재)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건설공사대장통보 확인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업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았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통보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음.

▶ 건설공사대장통보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7. 공사비 과다계상

- 건설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5. 1.26. ~ 2.19까지 ●●건설(주)

이○○, 권○○와 계약하여 시공한 □□공사는 2015. 2. 9. 설계변경과정에서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과다적용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248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음.

- ▶ 과다지급된 공사비 248천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